



의 안 번 호	제 호
회 의 연 월 일	2021. . . (제 회 정기회의)

의
결
사
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에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를 고려할 때 군 복무를 마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1호).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 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 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u>한정한다.</u> 2. (생 략)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u>18세 이상인 사람.</u>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연 락 처	(02) 3150 - 1226